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4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김기현 · 김상훈
김재섭 · 이달희 · 김위상
송석준 · 성일종 · 김소희
김정재 · 주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동산, 차량 등을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을 가진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환 전후로 발생한 실질적 소득이 체감되지 않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큰 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

켜 주고자 함(안 제148조의2 신설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0절에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8조의2(교환거래에 의한 주택·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
1.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2.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
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
1.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
2.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환거래에 의한 주택·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8조의2(교환거래에 의한 주택·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)</u> <u>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</u> <u>1.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</u> <u>2. 교환하는 쌍방 주택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</u> <u>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</u> <u>1.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</u> <u>2. 교환하는 쌍방 자동차의 교환 당시 가액의 차액이 대통</u>

	<u>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</u> <u>것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